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292

www.saboten.co.kr

최초 등록일 - 2008년 08월 14일

최종 등록일 - 2024년 11월 04일

webmaster@saboten.co.kr

## 사보텐 정 보 공 개 서

(주)캘리스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캘리스코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전화번호] : 02-6966-9637

[팩스번호] : 02-6713-653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사보텐영업팀 02-6966-963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 <별첨 3> 사보텐 취급상품(권장가격) 리스트
- <별첨 4>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 5> 주요품목의 거래형태
- <별첨 6>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7> 사보텐 서비스 체크리스트(가맹슈퍼바이저 관리)
- <별첨 8> 사보텐 청결도 체크리스트(가맹슈퍼바이저 관리)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이사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09. 10. 1 | 2009. 10. 1     | 장 성 호   | 02-6966-9637 | 02-6713-6531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4191055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32153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사용인<br>(임원) | 장성호    | 사보텐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5    |              |              |
|             | 구명진    | 사보텐              |                   |              |              |
|             | 우창표    | 사보텐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함형태    | 사보텐              | 장성호               | 02-6966-9637 | 02-6713-6531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
| 계열회사        | (주)아워홈 | -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0로 91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구지은               | 080-234-7575 | 02-6713-6531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862592 |                   | 사업자등록번호      | 107-81-76324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사보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 가 설 명                                                          |
|-----------|------------|------------------------------------------------------------------|
| 명 칭       | 사보텐        | 사보텐은 스페인어로 ‘선인장’이란 뜻이며, 언제나 선인장같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하는 염원으로 지어진 브랜드임 |
| 상 호       | 사보텐 ____점  |                                                                  |
| 상 표       | <b>사보텐</b> | 상표 등록번호: 41-0079080-0000                                         |
| 광 고       | 해당 없음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Saboten**  
THE ORIGINAL SHINJUKU DONKATSU

### < 사보텐 브랜드에 대하여... >

사보텐은 원래 스페인어(Saboten)로서, 물 없이도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의 ‘선인장’을 의미합니다. 신주쿠 돈카츠 사보텐은 이 선인장과 같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자 하는 염원으로 지어진 브랜드입니다.

**“1966년 일본 신주쿠에서 시작된 일본 정통 일식 돈카츠 전문점.”**

1966년 동경 신주쿠에서 시작된 사보텐은 특유의 맛과 푸짐한 볼륨감, 그리고 고객 스스로 개봉으로 깨를 간 다음, 향이 풍부해진 깨가루와 함께 사보텐 특제 소스를 섞어서 돈카츠를 먹는 스타일을 최초로 확립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내 델리카 숭 400여 개, 레스토랑 80여 개를 운영하며 일본 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사보텐은 2001년 사보텐 무교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기존의 돈카츠 브랜드와 차별화 된 맛과 서비스로 꾸준한 매니아 층을 형성하여 현재 국내에 5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툽한 숙성 돈육과 바삭한 생빵가루 튀김, 고소한 깨향 소스와 상큼한 유자 드레싱의 완벽한 맛의 조화는 오직 사보텐에서만 맛보실 수 있습니다.

### "Japanese Casual Restaurant"

밝고 따뜻한 Japanese Casual Restaurant 컨셉의 매장 인테리어 공간 속에서 일본 정통 돈카츠와 함께 소바, 우동, 롤, 알밥 등 다양한 콤비네이션 메뉴를 폭넓게 즐기실 수 있는 아늑하고 여유로운 휴식의 공간입니다.



<돈카츠>



<돈카츠우동셋트>



<실내 전경>



<로드샵 외부>



<백화점 외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br>이익   | 당기<br>순이익  |
|-------|------------|------------|------------|------------|------------|------------|
| 2021년 | 28,783,373 | 32,316,410 | -3,533,037 | 70,184,163 | -3,828,570 | -5,009,877 |
| 2022년 | 27,361,639 | 22,591,660 | 4,769,978  | 72,245,604 | 839,723    | 172,120    |
| 2023년 | 26,548,094 | 22,971,249 | 3,576,845  | 71,889,845 | 1,304,136  | 693,086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는 [사보텐], [타코벨], [히바린], [반주] 등 여러 브랜드의 외식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 외식 사업중에서 [사보텐] 브랜드를 직영점 및 외식가맹사업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별 또는 영업표지별로 그 매출액 분류 및 산정이 어려워 그 합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매출액 중에는 [사보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 장성호 | 대표이사  | 2023.03.29.~현재  | (주)캘리스코 대표이사 | 회사총괄  |
|      | 구명진 | 사내이사  | 2020.01.29.~ 현재 | 이사           |       |
| 관련임원 | 우창표 | 감사    | 2019.03.~현재     | (주)캘리스코 감사   | 감사    |
|      | 함형태 | 비상무이사 | 2022.12.16.~현재  | 이사           | 이사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3   | 1025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주)캘리스코 | 가맹사업<br>운영 | 2015.10.1.<br>~2020.12.<br>정보공개서<br>자진취소 | 반주(등록번호:20151085)라는 전통 및 퓨전<br>한식 전문점 가맹사업 운영하였음.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사보텐<br>(상표권) | 상표권<br>(국내 독점 사용) | 2001.2.17. 출원<br>2002.9. 5. 등록 | 출원:41-2001-00<br>02423<br>등록:41-0079080<br>-0000 | 지에이치에프<br>인터내셔널<br>싱가폴 피티이<br>리미티드 | 2032. 9. 5                 |
| 사보텐<br>(상표권) | 상표권<br>(국내 독점 사용) | 2001.2.17. 출원<br>2002.8.27. 등록 | 출원:41-2001-00<br>02422<br>등록:41-0078907<br>-0000 | 지에이치에프<br>인터내셔널<br>싱가폴 피티이<br>리미티드 | 2032. 8. 30                |
| 사보텐<br>(상표권) | 상표권<br>(국내 독점 사용) | 2001.2.17. 출원<br>2003.4.15. 등록 | 출원:45-2001-00<br>00601<br>등록:45-0007354<br>-0000 | 지에이치에프<br>인터내셔널<br>싱가폴 피티이<br>리미티드 | 2033. 4. 25                |
| 사보텐<br>(상표권) | 상표권<br>(국내 독점 사용) | 2001.1.19. 출원<br>2002.9. 5. 등록 | 출원:45-2001-00<br>00327<br>등록:45-0006225<br>-0000 | 지에이치에프<br>인터내셔널<br>싱가폴 피티이<br>리미티드 | 2032. 9. 1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GHF인터내셔널 싱가포르 피티이리미티드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HF 인터내셔널 그룹 정보>

| 명칭                     | 대표이사         | 설립일        | 자본금                | 본사주소              | 사업영역                                          |
|------------------------|--------------|------------|--------------------|-------------------|-----------------------------------------------|
| Green House Food Group | Tanuma Jiaki | 1947. 4. 1 | 2,143,040,000<br>엔 | 도쿄<br>오페라시티<br>타워 | 식음시설 /<br>레스토랑 /<br>델리 / 호텔<br>식음 /<br>숙박운영 등 |

※ 당사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사보텐] 가맹사업 현황

### 1. [사보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3년 10월 23일

(상기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1년 10월 23일)

[☞ 기존 가맹본부인 아워홈에서 2009년 10월 1일 “주식회사 베네스타” (2010년 8월 31일 “주식회사 캘리스코”로 상호 변경) 로 분할하여 설립되었는 바, 상기 내용은 분할 설립 전 회사인 (주)아워홈에서 최초로 사보텐 가맹 사업 및 직영점을 시작한 날입니다.]

### 2. [사보텐]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아워홈  | 사보텐  | 박준원     | 2003.10.23~2009.9.3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
| (주)베네스타 | 사보텐  | 박준원     | 2009.10.1~2010.8.31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9-3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이승우     | 2010.9.1~2011.7.31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9-3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구지은     | 2011.8.1.~2012.4.19.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9-3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구지은     | 2012.4.20.~2015.3.24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김태준     | 2015.3.25.~2015.6.2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안상현     | 2015.6.26.~2016.4.14.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구지은     | 2016.4.15.~2021.02.14.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구명진     | 2021.2.15.~2022.1.16.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장규형     | 2022.1.17.~2023.3.28.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주)캘리스코 | 사보텐  | 장성호     | 2023.3.29.~현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3. [사보텐]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대분류 | 소분류             |
| 사보텐  | 일식  | 신주쿠 돈카츠, 소바, 우동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사보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34         | 1    | 33   | 31         | 0    | 31   | 31         | 0    | 31   |

|    |    |   |    |    |   |    |    |   |    |
|----|----|---|----|----|---|----|----|---|----|
| 서울 | 22 | 1 | 21 | 20 | - | 20 | 17 | - | 17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1  | - | 1  |
| 인천 | 1  | - | 1  | 2  | - | 2  | 3  | - | 3  |
| 광주 | 1  | - | 1  | 1  | - | 1  | 1  | - | 1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6  | - | 6  | 5  | - | 5  | 7  | - | 7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1  | - | 1  | 1  | - | 1  | 1  | - | 1  |
| 충남 | 1  | - | 1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2  | - | 2  | 2  | - | 2  | 1  | - | 1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사보텐]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2  |       | 1     |       |       | 1  |
| 2022 | 1  |       | 1     |       |       | 0  |
| 2023 | 0  |       |       |       |       | 0  |

[사보텐]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를 확인하십시오.

#### 6. 『사보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사보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사보텐]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가맹점<br>수 | 2023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 : 천원)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 당 | 상한            | 면적<br>3.3㎡ 당 | 하한               | 면적<br>3.3㎡ 당 |    |
| 전체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당사의 추정 매출액은 사보텐 POS데이터를 근거로 2023년말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어 연평균매출액을 미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업장형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귀하가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보텐]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일) |
|-------|------------|------------|
| 2023년 |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 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본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고, 본사에서만 총괄적으로 사보텐 가맹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사보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상 광고 선전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47페이지)

| 과목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광고선전비 | 55,353              |

☞ 당사는 [사보텐], [타코벨], [히바린], [반주] 등 여러 브랜드의 외식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브랜드별 또는 영업표지별로 그 광고비, 판촉비 분류 및 산정이 어려워 다음페이지 판매관리비 항목상 광고선전비 합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매출액 중에는 [사보텐] 가맹사업 외의 광고선전비, 판촉비용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 선릉중앙기업금융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 02-569-1530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가맹금예치서비스]에서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사보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오픈시 소모품, 각종 공사 및 설비, 집기, 용역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천원)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 보증금 |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본부 및 협력업체 | 해당 없음    | 추정 금액  |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30,800 |              |                      |                                                  |    |
| 가맹금   | 16,500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 법령에 정한 사유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 사보텐 지적재산권 사용비 및 가맹본부의 노하우 제공,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용권 부여 등 |    |
| 교육연수비 | 5,500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 법령에 정한 사유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 전수 등                      |    |
| 홍보판촉비 | 8,800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 법령에 정한 사유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 영업개시 행사 및 계약기간동안 홍보, 선전 및 판촉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    |

※ 단, 푸드코트 매장일 경우 최초가맹금은 5,500/4,400/3,300천원(부가세 포함) 총 13,200천원(부가세 포함)을 적용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25,000 |              |                                     |    |
| 계약이행보증금      | 15,000 | 계약 체결후 1일 이내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의 담보 |    |
| 상품보증금 (보증보험) | 10,000 | 계약 체결후 1일 이내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물품의 대금에 대한 지급의 담보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45,800천원(단, 푸드코트일 경우 28,200천원)<부가세 포함>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금 액    |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
| 가맹금   | 16,500 | (단, 푸드코트 5,500 적용)  |
| 교육연수비 | 5,500  | (단, 푸드코트 3,300 적용)  |
| 홍보판촉비 | 8,800  | (단, 푸드코트 4,400 적용)  |
| 보증금   | 15,000 |                     |
| 합 계   | 45,800 | (단, 푸드코트 28,200 적용)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 분                       | 지급대상                   | 금 액                 | 3.3㎡당<br>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 고                                        |
|---------------------------|------------------------|---------------------|----------------------------------------------------------|------------------------------------------------------------|------------------------------------|--------------------------------------------|
| 총 계                       |                        | 221,720~<br>269,400 |                                                          |                                                            |                                    | 인테리어 제외                                    |
| 주방기구                      | 협력업체                   | 34,000~<br>40,000   | 800~<br>900                                              | 계약후 30%<br>납품설치<br>완료후 7일<br>이내 70%                        | 설치 전<br>계약취소                       | 냉장고,튀김기,제<br>빙기,식기세척기<br>포함<br>(숙성고 별도)    |
| 인테리어/설<br>비 (점포<br>내외장공사) | 협력업체                   | 180,000<br>~200,000 | 5,000~<br>4,500                                          | 계약후 30%<br>공사 진행율<br>70% 도달시<br>40%<br>공사 완료후<br>7일 이내 30% | 공사 전<br>계약취소                       | 전기,위생/공조<br>설비,냉난방기,가<br>스설비,가구 및<br>사인 포함 |
|                           |                        |                     | 5,000/3.3<br>㎡~<br>(99㎡이하)<br>4,500/3.3<br>㎡~<br>(99㎡이상) |                                                            |                                    |                                            |
| 기타 개점에<br>소요되는<br>비용      | (주)캘리<br>스코 또는<br>협력업체 | 220~4,400           |                                                          | 입고 해당월말                                                    | 개점 전<br>계약취소<br>(실제<br>소요비용<br>제외) | 오픈전 리플렛<br>등 홍보비용                          |
|                           | (주)캘리<br>스코            | 5,500~25,0<br>00    | 137.5~<br>625                                            |                                                            |                                    | 그릇, 명찰,<br>유니폼 등                           |
| 금융 비용                     | 해당 없음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매장면적(132㎡)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매장면적 등 여러가지 사정 변동에 의하여 실제 지불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지정 업체가 아닌 임의 선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할 경우, 당사에 공사감리비 11,000천원/평당275천원/40평기준(부가세 포함)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면제작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가정 상황              | 선정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물건 미확보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 가맹희망자가 확보된 입지없이 가맹본부 방문 → 상담을 통해 쌍방이 원하는 입지 파악 / 확인 → 가맹본부의 시장 분석 및 입지 조사 → 사보텐 자체 입지 발굴 → 입지에 대한 가맹희망자와 상담 → 동의시 사보텐 신규출점(반대시 발굴작업 지속)<br><br>※ 물건 미확보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방문했을 경우, 사보텐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 리스트 중 입점하기 좋은 물건이 없다면 가맹점 출점이 늦어질 수도 있음 |
|        | 물건 확보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여 가맹본부 방문 → 상담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입지가 속한 위치를 파악 → 가맹본부의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사보텐 출점가능여부 판단<br><br>※ 물건 확보한 가맹희망자 방문의 경우, 사보텐이 해당물건의 출점을 허가했다면 가맹점 오픈기간은 앞당겨 질 수 있음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br>만20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9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사보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 /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주)캘리스코 | 순 매출의 4.5%                                                                                              | 익월 5일         | 반환 되지 않음   | 사보텐 일본 본사에 대한 사용료 지급                    |                                              |
| pos 사용료                  | (주)캘리스코 | 월 5만5천원 ~ 월 10만원                                                                                        | 익월 5일         |            | 사보텐 POS 사용료 지급                          |                                              |
| 기타 교육연수비                 | (주)캘리스코 | 상호 협의                                                                                                   |               |            | 신규 및 보수교육 외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을 의미함 |                                              |
| 리스료                      | 해당 없음   |                                                                                                         |               |            |                                         |                                              |
| 광고 분담금                   |         |                                                                                                         |               |            |                                         |                                              |
| 간판류 임차료                  |         |                                                                                                         |               |            |                                         |                                              |
| 영업지역 보장금                 |         |                                                                                                         |               |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력업체    | 협의                                                                                                      |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 공사2일 이전 취소 | 공사 시작 후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협력업체    | 당사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 공사 시작 전 취소 | 공사 시작 후                                 |                                              |
| 자연이자                     | 가맹본부    | 1. 체납기간이 15일內 : 미납금액의 월 1%<br>2. 체납기간이 15일 ~ 30일內 : 미납금액의 월 1.25%<br>3. 체납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 미납금액의 월 2.5% | 완제일까지         |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 없음   |                                                                                                         |               |            |                                         |                                              |
| 회계처리 비용                  |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기준: 2023년)                  | 내 용 (단위/천원)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14,215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5%          |

상기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의 매출과 차액가맹금 산출이 가능한 1곳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임대매장 관리업체가 통제하는 POS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사업자의 공정한 매출산정 및 당사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당사가 지정하는 POS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약갱신료로 금 오백오십만원(₩5,500,000원)<부가세포함>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푸드코트 매장의 경우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전에 양도 사실을 통보한 후 가맹사업자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은 유지됩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상기의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에서 가맹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가맹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가맹사업자가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에서 가맹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가맹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종료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사보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캘리스코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상품보증금은 양수인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                                                                                                                             | 계약서 조항 |
|-----------------------------------------------------------------------------------------------------------------------------------------|--------|
| 1. 점포운영을 즉시 중지하며, 점포가 사보텐이라는 것을 소비자나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것                                                                             | 제38조   |
| 2. 사보텐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기술, 사보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                                                                   |        |
| 3. 본 영업지역 및 타 영업지역에서 타 영업을 하는 경우, 사보텐 시스템과 혼동될만한 프랜차이즈 및 지적재산권의 행사, 표시등을 금할 것                                                           |        |
| 4. 보유중이던 매뉴얼, 기록, 파일 등 자료를 사보텐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                                                                                              |        |
| 5.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에 연계된 거래회사에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해 계약종료 및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하며, 이것이 지연될 경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기간동안 연리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

|                                                                                                                                                                                             |                           |
|---------------------------------------------------------------------------------------------------------------------------------------------------------------------------------------------|---------------------------|
| 6.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가맹본부에 발생한 손해,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로열티의 일할 금액 × 남은 계약일의 금액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삼천만원(₩30,000,000원)으로 한다. | 제36조<br>3항,<br>제37조<br>4항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세부사항

귀하가 『사보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① 귀하가 [사보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거래형태는 [별첨5]와 같습니다.
- ②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귀하가 [사보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6]과 같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및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사보텐]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사보텐]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별첨 3 참조 | 별첨 3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2회 이상 : 서면 시정 요구<br>3회 : 계약 해지<br>(가맹계약서 13조 2항에 근거) | 계절 페어메뉴도 추가 제작/ 판매시<br>必 판매상품 반영 |

※ 사보텐 취급상품 리스트 (별첨 4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가격결정 |
|--------|-----------------------------------|----------------|---------------------------------------------------------------------------------------|------|
| 별첨3 참조 | 가맹점 담당자의<br>점포방문후 직접<br>통보 및 메일통보 | 2023.12월<br>기준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br>가 권장한 표준 판매가<br>격을 최대한 따르기로<br>하며, 다른 판매가격을<br>정하고자 할 경우에는<br>가맹본부와 협의 |      |

#### 4. 가맹사업장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돈카츠, 우동, 소바 등을 취급 / 판매하는 업종 | 사보텐      |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영업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반경 500m로 하며, 상업지역의 경우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영업지역을 거리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당사와 합의하에 그 영업지역을 결정하기로 하되, 지도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
5.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대형슈퍼·연금매장·백화점·할인점·지하철역내 등에 Shop In Shop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
6. 지방 중심상권 및 도심상권

### 3)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정 사유                                                                                                                                                                                                                 | 재조정절차                                                                           | 합의 방법                                                                     |
|------------------------------------------------------------------------------------------------------------------------------------------------------------------------------------------------------------------------|---------------------------------------------------------------------------------|---------------------------------------------------------------------------|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함<br>, 합의를 거친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에 해당되어(가맹사업법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 영업지역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사보텐]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0                     | 100     | -             | -      |

당사는 온라인 판매 매출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당사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전용상품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사보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갱신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단, 전체 가맹계약기간은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 2항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사보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조치 사항, 상품대금, 설비대금 기타 금전채무의 납입을 불이행, 거부, 지체한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연체금이 가맹본부가 규정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고 가맹본부가 범위 내로의 축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본 계약에 의거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회계 및 기록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불이행, 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                                                |         |
| ○ 가맹본부가 지정한 독립되고 공인된 실험결과 점포의 건축 시설물, 위생환경이 공공의 안전이나 소비자보호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본 계약에 의거 통일되고 높은 수준의 품질수준, 서비스, 청결상태의 유지와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이 조사한 결과 매뉴얼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 ○ 본 계약에 의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이 점포, 원료, 상품 및 근무자에 대한 검사결과 매뉴얼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등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결과 고의적 매출누락 및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누락에 대한 추가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         |
|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없이 영업을 양도, 전대하거나 영업재산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
|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한 상표 및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범위를 벗어나 무단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갑”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 및 주방기기 및 집기, 비품이 가맹본부의 표준사양과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         |
|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관련계약조문  |
|-------------------------------------------------------------------------------------------------------------------------------------------------------------------------------------------------------------------------------|---------|
|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6조 1항 |
|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불정지가 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 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쌍방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 관련 계약조문            |
|--------------------------------------------------|--|--------------------|
| ○ 개점 후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높아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 조정할 경우        |  | 제14조 2항<br>제41조 2항 |
| ○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로 서면 작성하는 경우                     |  |                    |
| 수 정 절 차                                          |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서면 합의 |  |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인이 점포를 임차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 부터의 임대차 양도가 가능해야 함</li> <li>○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li> </ul>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서면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사보텐사업팀<br>(02-4846-8217)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상품보증금은 양수인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전 광고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속 받았다는 증빙 자료 제출<br>②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 모든 권리 의무 |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통보하고 본사는 상속인에게 가맹점 교육을 실시      | 교육비 부담 |
| 성년후견개시<br>(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포함)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성년후견인은 후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 개시사실을 가맹본부에 통보하고 본사는 성년후견인에게 교육을 실시 | 교육비 부담 |
| 그외<br>대리행사 및<br>업무위탁           | 불가능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귀하가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사보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당사는 즉시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경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서면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돈카츠, 우동, 소바 등을 취급 / 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br>→ 당사 사보텐사업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br>→ 완료 | 문의:<br>사보텐사업팀<br>(070-4846-8217)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사보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0:00 ~ 22:00 (12시간)<br>(단축영업시 사전 서면 통지 포함) | 연중무휴<br>(휴무할 경우 7일전 서면 통지 포함) | 문의: 사보텐사업팀<br>(070-4846-82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로드샵  | 주방 3명 이상<br>홀 2명 이상 | 관계없음     | 당사와 사전협의(면접후<br>부적격자 / 보건증<br>미소지자 제외) | 매출액 및 전용면적에<br>의해 변동가능하며,<br>최저 2명 이상임 |
| 푸드코트 | 주방 3명 ~ 4명          | 관계없음     | 당사와 사전협의(면접후<br>부적격자 / 보건증<br>미소지자 제외) | 매출액 및 전용면적에<br>의해 변동가능하며,<br>최저 2명 이상임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감독         | 감독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      | 비 고           |
|---------------|------------------------------------------------------|---------|---------|---------------|
| 위생, 품질 서비스 관리 | 담당 매장 방문→ 확인→<br>사업자 확인 → 완료<br>* 추가 시정사항 체크시<br>재방문 | 월 2회    | 가맹점 담당자 | 지방<br>3개월당 1회 |
| 매출 관리         | 매장 방문 - 실적분석,<br>자료 공유                               | 월 2회    | 가맹점 담당자 | 지방<br>3개월당 1회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서비스 및 청결도 체크리스트 (별첨 7, 8 참조)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진행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판촉 활동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며 광고에 대하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가맹본부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상품광고                                                                           | 50%    | 50%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br>광고참여 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 공지 | 대중매체<br>광고<br>온라인광고<br>(전국 행사) |
|             | 상품광고<br>+ 가맹점<br>모집광고                                                          | 50%    | 50%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행사        | 계약체결시 예치한 홍보판촉비용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br>판촉행사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br>추가부담은 없음. |        |       |                                              | 분기별<br>폐어메뉴<br>판촉행사            |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귀하는 『사보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집행내역 통보 내용                                                       |
|------------------------------------------------------------------|
|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는 당사와 그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 또는 그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귀하는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리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 그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로열티의 일할 금액 X 남은 계약일의 금액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 삼천만원(₩30,000,000원)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그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로열티의 일할 금액 X 남은 계약일의 금액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 삼천만원(₩30,000,000원)으로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구 분              | 내 용                                          | 일 정                                                      | 비 용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br>-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D-90                                                     |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담당자 상담<br>-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br>-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D-90 ~ 70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br>-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     |
|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 D-70 ~ 60<br>정보공개서,<br>가맹계약서<br>교부된<br>날로부터<br>14일이 지난 후 |     |
| 가맹 계약            | -가맹 계약 체결                                    |                                                          |     |
| 가맹금 등 지급         | -가맹금 예치                                      |                                                          |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D-60 ~ 45                                                |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45일<br>(교육 14일 포함)                                       |     |
|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     |
|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즉시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

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li> </ul> <p>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시절차&gt;<br/>○ 가맹점사업자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li> </ul> |



|  |  |  |                                                                                                                                                                                        |  |
|--|--|--|----------------------------------------------------------------------------------------------------------------------------------------------------------------------------------------|--|
|  |  |  |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br><br>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br><br>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br>본부<br>요청<br>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br>촉진, 고객관리, 위생<br>관리, 교육훈련, 회계<br>등 가맹점 운영 전반<br>에 대한 경영지도 |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br>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br>[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br>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br>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br>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br>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 가맹본부 |
| 가맹점<br>사업<br>자<br>요청<br>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br>촉진, 고객관리, 위생<br>관리, 교육훈련, 회계<br>등 가맹점 운영 전반<br>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br>→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br>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br>[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br>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br>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br>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br>고 이를 설명. | 통상적인 가맹점<br>경영지도 외<br>가맹점사업자가<br>특별 경영지도<br>요청시<br>경영지도담당자<br>(1일 1인 기준<br>일금이십이만원<br>(₩220,000)<br><VAT포함>) | 문의: 가맹본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사보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교육   | 회사 소개                  | 실습 교육 | 오픈 7일전                        | 필수 교육             |
|        | 음식 가공                  |       |                               |                   |
|        | 회계(입금, 소모품)            |       |                               |                   |
|        | POS 사용, 발주시스템          |       |                               |                   |
| 보수교육   | 품질, 서비스 청결,<br>레시피, 위생 | 실습 교육 | 분기별 QSC체크<br>부진점포<br>(주방 책임자) | 의무교육(년 4회)        |
| 신메뉴 교육 | 신메뉴 조리                 | 실습 교육 | 신메뉴 출시<br>(주방 책임자외 1명)        | 매년<br>필수적으로<br>이수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사보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 비고          |
|-----------|---------|--------------|-------------|
| 신규 교육     | 6주(30일) | 3,300(VAT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신메뉴 교육 | 최소 4일   | 無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신규, 보수 / 신메뉴 교육외 점주가 요청하는 기타교육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교육, 훈련 불참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19조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보수교육 2회 이상불참시 : 신메뉴제공 중단
- 2) 보수/신메뉴교육 불문하고 "갑"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4회 불참시 "갑"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이 2, 3회 불참시 서면을 통하여 4회까지 불참할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023년말 기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경기 | 신세계의정부점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
| 2  | 경기 | AK평택점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           |
| 3  | 경기 | 스타필드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양대로 1955    |
| 4  | 경기 | 신세계배곧점     | 시흥시 서해안로 699             |
| 5  | 경기 | AK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
| 6  | 경기 | 파주프리미엄아울렛점 |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200           |
| 7  | 경기 | AK수원점      |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
| 8  | 경남 | 신세계마산점     |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10-3        |
| 9  | 광주 | 신세계광주점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
| 10 | 대구 | 신세계대구점     | 대구시 동구 동부로149            |
| 11 | 서울 | 압구정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2길 32       |
| 12 | 서울 | 경방타임스퀘어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
| 13 | 서울 | 현대미아점      | 서울 성북구 길음동 20-1          |
| 14 | 서울 | 아워홈빌딩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5          |
| 15 | 서울 | 대치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504          |
| 16 | 서울 | 신논현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62       |
| 17 | 서울 | 선릉역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
| 18 | 서울 | 사당점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1          |
| 19 | 서울 | 종로그랑서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
| 20 | 서울 | 코엑스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 21 | 서울 | 교대역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0     |
| 22 | 서울 | 건대스타시티점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번길 74    |
| 23 | 서울 | GFC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
| 24 | 서울 | 여의도메리츠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 25 | 서울 | 신천점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        |
| 26 | 서울 | 압구정역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       |
| 27 | 서울 | 청량리역사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
| 28 | 인천 | 인천스퀘어원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210       |
| 29 | 인천 | 인천공항탑승동점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
| 30 | 인천 | 인천공항T2점    |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446        |
| 31 | 충북 | 청주터미널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2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7년 3개월(약88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보텐사업팀(070-4846-821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과(044-200-4239~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saboten.co.kr](http://www.saboten.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 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 순번 | 지역 | 가맹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별첨3> 사보텐 취급상품(권장가격) 리스트(2024년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4>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 제5호서식] <개정 2012.5.7>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가맹본부        | 상호(영업표지)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
| 신청인의<br>계좌  |           |      |    |
| 가맹본부의<br>계좌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5, 별첨6> 주요품목의 거래형태 및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4년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7> 사보텐 서비스 체크리스트(가맹슈퍼바이저 관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8> 사보텐 청결도 체크리스트(가맹슈퍼바이저 관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사보텐 가맹본부 (주)캘리스코』로부터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시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람 :

4.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          |     |
|--------|-----------------------------------------|----------|-----|
| 가맹본부 : | 사보텐 가맹본부<br>주식회사 캘리스코<br>대표이사 장 성 호 (인) | 수 령 자 :  |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